

인도네시아 P2P 대출 관련 최신 법령 소개

October 12, 2022

▣ 인도네시아 P2P 대출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의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P2P 대출 사업자의 총 자산은 전통적인 소액 대출 위주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총 자산의 약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¹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개인들과 소규모 자금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P2P 대출 사업자를 통하여 더욱 간편하게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P2P 대출 산업은 OJK에서 마련한 「2016년 제77호 정보기술기반 대출 및 차입서비스에 관한 OJK규정」(*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77/POJK.01/2016 TAHUN 2016 TENTANG LAYANAN PINJAM MEMINJAM UANG BERBASIS TEKNOLOGI INFORMASI*, 이하 “**POJK 77/2016**” 또는 “기존 **OJK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P2P 대출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그 동안 P2P 대출 산업 내에서 채권 회수방법의 위법성, 다소 높은 이자율, 개인정보보호의 미비, P2P 대출 사업자의 난립 등의 문제로 인하여 P2P 대출 산업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OJK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P2P 대출 사업자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P2P 대출 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OJK에서는 P2P 대출 산업의 성장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며 그 동안의 정보기술의 발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4일 「2022년 제10호 정보기술기반 자금조달서비스에 관한 OJK규정」(*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POJK.05/2022 TAHUN 2022 TENTANG LAYANAN PENDANAAN BERSAMA BERBASIS TEKNOLOGI INFORMASI*, 이하 “**POJK 10/2022**”)을 마련하였습니다.

1 OJK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 55페이지

POJK 10/2022 개정 주요 내용

POJK 10/2022의 제정 및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2P 대출 산업 관련 주요 내용>

사항	POJK 10/2022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사업허가 및 지분 구조 변경 금지	<u>사업허가(라이선스)제도로 단일화</u> • <u>등록 단계의 폐지</u> 기존 OJK규정에서는 i) 등록 + ii) 사업허가 발급의 2단계로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POJK 10/2022에서는 등록 단계가 폐지됨 • <u>사업허가 단계에서 추가 사항</u>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OJK의 사업허가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전자시스템운영자로 등록하여야 함 ⇒ 미등록시 P2P 대출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금지됨 • <u>사업허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지분구조 변경 금지</u> OJK의 사업허가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 새로운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분 구조 변경이 금지됨 - 사업자의 지배주주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분 구조 변경이 금지됨	※ 전자시스템운영자(ESO)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전자 정보를 준비, 수집, 처리, 분석, 저장, 표시, 발표, 전송 및/또는 배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전자장치를 운영하는 자로서, 전자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지배주주란, P2P 사업자의 발행된 주식 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2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자 ※ P2P 사업자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지배주주를 공시하여야 하고, 만약, 지배주주 기준을 충족하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그 해당 주주 모두를 지배주주로 간주

사항	POJK 10/2022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최소 납입자본금 및 상시적 최소 자본 보유	<u>최소 납입자본금 등 요건 강화</u> • <u>설립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증가</u> - 기존 OJK규정에 의하면, P2P 대출 사업자의 설립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은 25억 루피아 - POJK 10/2022에 따라 최소 납입자본금이 10배 증가 됨 최소 250억 루피아(약 23억원) - 위 최소 납입자본금은 인도네시아의 시중 은행에 정기 예금 형태로 전액 예치하여야 함 - 위 증가된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 (기존 OJK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예외) • <u>상시적 최소 자본 보유 요건</u> - 기존 OJK규정에 따른 기존 사업자 및 POJK 10/2022에 따른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 P2P 사업자는 상시적으로 최소 자본을 유지하여야 함 <table><tr><th>상시적 최소 자본 보유 금액</th><th>기간</th></tr><tr><td>25억 루피아</td><td>2023. 7. 4</td></tr><tr><td>75억 루피아</td><td>2024. 7. 4</td></tr><tr><td>125억 루피아</td><td>2025. 7. 4</td></tr></table>	상시적 최소 자본 보유 금액	기간	25억 루피아	2023. 7. 4	75억 루피아	2024. 7. 4	125억 루피아	2025. 7. 4	
상시적 최소 자본 보유 금액	기간									
25억 루피아	2023. 7. 4									
75억 루피아	2024. 7. 4									
125억 루피아	2025. 7. 4									
대출금액 및 조 달 비율 한도	• <u>대출 자금수령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u> - 자금수령자 1인당(1개 사업체당) 20억 루피아 • <u>P2P 대출 사업자의 자금 조달 한도</u> - 1개의 자금제공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한도는 매월말 기준 P2P 대출 사업자가 조달하고 있는 총 전체 자금의 25% 비율 초과 금지 (최종 목표) - 다만, 위 자금 조달 한도는 단계적으로 실시 <table><tr><th>매월말 기준 자금 조달 비율 한도</th><th>기간(기재 시점까지)</th></tr><tr><td>80%</td><td>2023. 1. 4.</td></tr><tr><td>50%</td><td>2023. 7. 4.</td></tr><tr><td>25%</td><td>2024. 1. 4.</td></tr></table>	매월말 기준 자금 조달 비율 한도	기간(기재 시점까지)	80%	2023. 1. 4.	50%	2023. 7. 4.	25%	2024. 1. 4.	※ OJK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은 매월말 기준으로 P2P 대출 사업자가 조달하고 있는 총 전체 자금의 75% 비율까지 P2P 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음 ⇒ P2P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OJK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하나의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조달받는 것이 가능
매월말 기준 자금 조달 비율 한도	기간(기재 시점까지)									
80%	2023. 1. 4.									
50%	2023. 7. 4.									
25%	2024. 1. 4.									

사항	POJK 10/2022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 위 자금 조달 한도는 OJK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의 지분 제한	• 외국인의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 -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한도는 원칙적으로 총 발행주식의 85%임 • 외국인(자연인)의 지분 취득 방법 제한 - 외국인(자연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P2P 대출 사업자의 지분 취득 가능 - 즉, 비상장회사인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자연인)의 지분 취득은 금지됨 - 외국인(법인)에게는 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음 •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지분 취득 제한 예외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한 지분 취득시에는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한 주식 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즉, 증권거래소를 통한 지분 취득시에는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 모두 포함)도 85%를 초과하는 P2P 대출 사업자의 지분보유 가능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 / 승인	•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의 대상 - 지배주주 - 이사 - 감사 •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 및 승인 - OJK가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 실시 -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는 P2P 사업자의 지배주주,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 사전에 이루어짐 -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를 통과한 자의 이사, 감사 등의 취임에 대해서도 OJK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존 OJK규정에 의할 때에는 지배주주, 이사, 감사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절성 검사가 없었음

사항	POJK 10/2022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역량 인증 제도 도입	• 이사, 감사에 대한 역량 인증 - 금융기술분야 전문인증기관의 업무역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OJK로부터 이사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에 대한 소명이 요구됨.	
P2P 사업자의 지배구조	•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가능 • 이사는 최소 2명 이상 - 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절반 이상은 금융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관리 경험 필요 - 이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3개의 다른 회사에서 감사의 직책을 겸직하는 것 이외에 겸직이 제한됨 - 외국인(법인)이 P2P 대출 회사의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외국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모든 이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여야 함 • 감사는 최소 1명, 최대 이사의 수와 동수이어야 함 - 감사위원회 구성원(감사)의 절반 이상은 금융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 필요 - 감사는 최대 3개의 회사까지만 겸직을 하는 것이 허용됨 - 전체 감사의 절반 이상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감사를 외국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내부 감사 부서 필수화 - 인사담당자가 운영하는 P2P 대출 사업자 내부의 감사 부서 필수 - 매년 최소 1회 내부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기존 OJK규정에서는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 (<i>Koperasi</i>)의 형태로 P2P 사업 영위 가능

사항	POJK 10/2022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OJK의 승인 및 OJK에 대한 보고 사항	• OJK의 승인 사항 - 새로운 주주의 추가 - 지배주주의 변경 - 자본금의 변경 - 이사, 감사 변경 - 인수, 합병 • OJK에 대한 보고 사항 - 상호의 변경 - 전자시스템의 명칭 변경 - 주소의 변경 - 지점의 개설 및 폐쇄 - 사업모델의 변경	※ 기존 OJK규정 내용 재 확인

평가

인도네시아의 P2P 대출 산업은 디지털 환경 및 인프라의 급속한 전파, 새로운 금융기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상당한 잠재 시장의 존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그 도입 초기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P2P 대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련된 POJK 10/2022에서는 2016년에 제정되었던 기존 OJK규정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P2P 대출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요건, 지배구조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모두 기존 OJK 규정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POJK 10/2022에서는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의 방법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다른 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JK가 금융 서비스 산업 내 여러 사업 영역들 사이에서 조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POJK 10/2022의 제정 및 도입에 따라, 기존 OJK규정은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POJK 10/2022 제117조에서는 기존 OJK규정의 내용이 신규 법령인 POJK 10/2022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 기존 OJK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규정 및 제도의 도입에 따른 P2P 대출 관련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여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

인도네시아 법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세종 인도네시아 그룹

법무법인(유)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 2018)를 저술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최고의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파견 전에 약 10년간 부동산 투자, 건설, PPP, M&A, 일반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로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소: Lantai 29 The Plaza Office Tower, Jl. M. H. 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877-8392-4470 Fax: +62-21-2992-1516 E-mail: dholee@shinkim.com

For Questions or Comments

- 김대식 | 변호사 T. 02-316-4614 E. dshkim@shinkim.com
- 길영민 | 변호사 T. +84-28-3827-4214 E. ymgil@shinkim.com
- 이대호 | 변호사 T. +62-877-8392-4470 E. dholee@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